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발의년월일 : 2006. 4.

발 의 자 : 오윤수 위원 외 1

1. 개정이유

지방자치법이 개정(2005.1.27 법률제7362호)되어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 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정례회의 회의일수를 규정한 제3조를 삭제함.(안 제3조)
- 나. 집회일이 토요일인 때에는 공휴일이 아닌 그 다음날에,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함.(안 제4조)

3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(2005.1.27 법률제7362호)제41조제2항

4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하고 “동법시행령”을 “동법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4조중 “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”를 “다만, 그 날이 토요일인 때에는 공휴일이 아닌 그 다음날에,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</u>(이하 법 이라 한다) 제38조 및 <u>동법시행령</u>(이하 영 이라 한다)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회(이하 의회 라 한다)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회기)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.</p> <p>제4조(집회) 영 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</p> <p>① (생략) ②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---동법 시행령 -----</p> <p>제3조(회기) (삭제)</p> <p>제4조(집회) ----- -----다만, 그 날이 토요일인 때에는 공휴일이 아닌 그 다음날에,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